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 운영 규정 /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 /
바리스타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입안서



2025년 6월 5일

한국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 운영 규정,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 규정, 바리스타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 (제정안, 폐지안)

1. 규정 제·개정 및 폐지 목록표

구분	분류	규정명	제·개정 사유
제정	3장. 사무행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단 운영 규정	외부제정지원사업 참여에 따른 규정 제정
폐지	3장. 사무행정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 사업(LINC) 운영 규정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종료에 따른 규정 폐지
폐지	13장. 산학협력단 규 정	바리스타교육인증센터 운영 규 정	산학협력단 부속 바리스타교육인증센터가 호텔제과 제빵과로 이관으로 인한 삭제

2. 규정 제·개정 및 폐지 주요 내용

- 경기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2025~2029) 선정에 따라 사업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산학연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LINC) 사업종료에 따라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
- 바리스타인증교육센터 호텔제과제빵과로 이관되어 바리스타교육인증센터 운영 규정을 폐지
하고자 함.

3. 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4. 규정 제정(안) 전문 첨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 사업단 운영 규정	규정번호		KTC-00-00	
		제정일자		2025. 07. 01.	
		개정일자			
		개정번호		총페이지	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한 RISE사업단(이하“사업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컨소시엄 구성) RISE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내 시·군, 대학 및 전문대학, 기업체 및 연구소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컨소시엄에 관한 사항은 양 기관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3조(업무)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업비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업 수행결과와 보고 및 성과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 업무를 총괄하며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교무위원으로 보한다.

② 사업단장의 임기는 총 사업기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사업조직 구성) ① 사업단은 총장직속으로 설치 운영하며, 사업단장이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팀과 사업관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수행 계획의 수립 및 사업실행
2.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3. 사업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4. 성과지표 관리 및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5. 자체운영지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7. 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교무위원급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총 사업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피한 경우 총장의 재임명 할수 있다.

④ 사업추진팀은 업무분장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 수행을 위한 영역에 해당되는 부서를 중심으로 구성한다.

⑤ 사업관리팀은 사업의 공정성·투명성을 위하여 운영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회계 관리와 더불어 전반적인 사업을 관리·감독한다. 조직구성과 담당 역할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⑥ 사업단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과 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제6조(고등직업교육혁신 RISE위원회) ① 대학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의견 조율 등 유기적 협력체계

수립을 위해 고등직업교육혁신 RISE위원회(이하“RISE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대학별 공동위원장 1명, 위원 1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위촉하는 16인 이내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정한다.

③ 한국관광대학의 RISE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총장, 위원은 RISE사업단장으로 한다.

④ RISE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정보 공유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원 공유방안 협의
3. 사업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의견 조율
4. 그 밖의 사업 협력을 위한 주요사항 논의

⑤ 회의는 주관대학 공동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사업운영위원회) ①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 및 예산 집행 등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업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진위원회는 교무위원,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RISE사업단장이 되고,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정한다.

④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세부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심의
2. 사업 세부 예산 집행계획 변경에 관한 심의
3. 사업 추진결과 및 운영방안 심의
4. 그 밖의 사업 관련 세부 사항 심의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자체평가위원회) ①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평가위원회는 교무위원, 교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장이 되고,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정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집행 현황 점검
2.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
3. 사업의 성과지표 평가 및 심의
4. 그 밖의 자체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9조(예산중복방지위원회)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간의 중복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예산중복방지위원회(이하 “중복방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중복방지위원회는 교무위원, 교수, 직원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중복방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팀장이 되고,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정한다.
- ④ 중복방지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정지원사업간의 중복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
 2. 중복집행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예산계획 방지에 관한 사항
 4. 재정지원사업의 중복 지출 방지에 관한 사항
 5. 기타 재정지원사업간 중복집행방지와 관련된 제반사항
-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성과관리위원회) ① 사업 성과지표 달성을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사업의 지속 및 확산을 위해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성과관리위원회”)를 둔다.

- ② 성과관리위원회는 교무위원, 교수를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③ 성과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위원 또는 교수에서 임명하고, 임기는 사업기간으로 정한다.
- ④ 성과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 성과지표의 정기적인 모니터링
 2. 사업 성과지표 분석 및 환류 방안 수립
 3. 기타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지침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